



[포럼]

# 데이트/관계/폭력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세번째



---

# Program

[포럼]

## 데이트/관계/폭력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세 번째

---

2015. 10. 29.

| 16:00~18:00 |

### 1부. [포럼] 데이트/관계/폭력

- 사회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 발제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허은영 (전 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연구원)  
정은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19:00~21:00 |

### 2부. [토크콘서트] 본격연애토크 <愛:say>

- 토크 - 愛:say: 아주 작게만 들리더라도
- 공연 - 최고은



---

# 목 차

[발제] 데이트/관계/폭력을 말하다	6
[토론1] ‘사랑’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데이트폭력에 맞서기	37
[토론2] 친밀한/관계, 그 안에 교차되는 위치읽기	47
[토론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십대 성문화 읽기	53
[토론4] 친밀함을 중단할 권리	67
[토론5]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85



### 데이트/관계/폭력을 말하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 1. 들어가며

최근 데이트폭력을 다루는 뉴스 기사를 보고, 자신의 상황이 데이트폭력임을 알고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데이트폭력 상담 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호소는 “저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대요.”, “헤어지자고 해서 더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찌죠?”, “잘 헤어지고 싶어요.” 라는 말이다. 흔히 연인관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결단으로 헤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데이트폭력을 사적인 영역이라는 결론으로 쉽게 이끌고 간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와 폭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데이트관계는 둘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지만 이 관계 내에 폭력이 개입되었을 때도 ‘사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싫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경험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거나, 이래서는 도저히 헤어질 수 없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

는 것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면 긴급한 상황인 것 역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 대한 긴박감이나 두려움은 공유되거나 공감 받지 못해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 문제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시행되던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1998년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사회의 인식은 폭력을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을 금기시 했다. 이런 사회의 현상은 비단 가정폭력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뉴스나 상담을 통해 접하게 되는 데이트폭력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성과 그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공통점이다. 폭력이 일상의 공간과 시간을 침해한다는 점, 피해자의 많은 수는 여성이거나 둘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은 동거를 통해 사실혼이나 결혼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가정폭력의 연결선에 있다고 본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연관성을 보여준 통계로는 2004년 청주여자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재소자 531명중 133명(30.5%)이 남편 살해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 중 ‘결혼 전에도 폭행에 시달렸다’는 응답자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김영희, 2004)<sup>1)</sup>된바 있고,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2006-2007년 면접상담통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중 22.8%가 결혼 전부터 폭력이 있었다<sup>2)</sup>고 응답하여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행위자의 첫 폭력행사시기를 보호시설과 상담소 입소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보호시설 입소자의 26.5%, 상담소 이용자의 22.9%, 전체평균 24.5%가 결혼 전(교제기간 중)부터 폭력이 있었다<sup>3)</sup>고 응답하였

1) 김영희(2004), 여성살인범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법무부보고서

2) 한국여성의전화(구.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2006-2007년 면접상담통계



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성폭력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성폭력발생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며, 성폭력 피·가해자의 관계에서 데이트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분석한 결과 데이트상대로부터 폭언과 욕설, 정신적 괴롭힘, 성관계 사실 폭로와 데이트비용을 빌미로 한 강요와 협박, 성적·신체적 침해를 겪는 피해들이 있다. 바로 데이트폭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데이트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기는 하다. 이 용어는 데이트 관계 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는 유용하나 데이트관계 내의 폭력을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만 환원하는 즉 ‘피해’를 성적인 침해의 범주로만 한정해 버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0년부터 데이트성폭력이라 이름 붙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하고 주목한 데에는 피해자들이 데이트 상대자로부터 성적인 폭력 외에도 다양한 폭력-감시·통제·폭언·갈취·협박·폭행·상해·감금·납치·살인미수 등-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 둘째 상담소나 제도적 지원체계 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의료적, 법적 지원만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성폭력 피해가 아닐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 셋째 데이트관계 내의 폭력 문제가 가부장제 사회이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sup>4)</sup>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한 2006년을 시작으로 꾸

3) 여성가족부(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4) 문채수연, 『여성주의상담과 사례슈퍼비전』 여성주의 상담과 데이트폭력, 2012 : 298

준히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즐거운 데이트를 원하세요?’ 브로슈어를 만들어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과 상담소에 배포하였다. 2007년에는 데이트폭력근절캠페인의 일환으로 4종의 포스터와 엽서를 서울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국 상담소와 시미단체에 배포하였다. ‘안녕데이트공작소(sogoodbye.org)’를 통해 데이트폭력 상담 및 대처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인식조사, 상담에 나타난 데이트폭력의 경향성 분석을 토대로 대중강좌 “사랑에도 공부야 필요하다”, “데이트UP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우리 사랑일까: 연애인을 위한 리얼 토크” 소책자 제작, 연애매거진 愛:say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 2. 상담통계에 나타난 데이트 폭력의 현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2014년 7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전화·이메일로 접수된 상담 846건 중 187건의 데이트폭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상담통계는 상담내용에 드러난 결과를 상담원이 상담내용에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된 것이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98.9%는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100%는 남성으로 조사되었다.

**표1.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성비**

(건수/비율 %)

	여자	남자	미파악	합계
피해자	185 (98.9%)	1 (0.5%)	1	187
가해자	0 (0%)	185 (100%)	2	187

피·가해자의 나이에서 피해자는 49.5%가 20대, 27%가 30대이며 가해자는 20대, 30대가 각각 32.8%, 40대 15.6%로 나타났다. 특정연령대에서 집중적이긴 했으나 전 연령대를 거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결혼 상태는 비혼 82.3%, 기혼 6.1%, 이혼 5.5%, 사별 3%로 나타났다.

표2.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해자의 나이

(건수/비율 %)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미파악	합계
피해자	9 (8.1%)	55 (49.5%)	30 (27.0%)	10 (9.0%)	6 (5.4%)	1 (0.9%)	76	187
가해자	6 (9.4%)	21 (32.8%)	21 (32.8%)	10 (15.6%)	5 (7.8%)	1 (1.6%)	123	187

표3.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결혼상태

(빈도/비율 %)

비혼	기혼	사실혼	이혼	동거	별거	사별	미파악	합계
135 (82.3%)	10 (6.1%)	1 (0.6%)	9 (5.5%)	3 (1.8%)	1 (0.6%)	5 (3.0%)	23	187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사귀기전부터 6개월까지 관계초기부터 폭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비율의 54%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폭력이 시작된 시기**

(건수/비율 %)

사귀기전	3개월 미만	3-6개월	6-1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기타	미파악	합계
1 (1.6%)	26 (41.3%)	7 (11.1%)	8 (12.7%)	7 (11.1%)	3 (4.8%)	1 (1.6%)	2 (3.2%)	8 (12.7%)	124	187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적 폭력이 46%, 신체적 폭력이 44%, 성폭력이 4%로 나타났었다.

**표5. 2014년 데이트관계에서의 폭력의 유형(복수응답)**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빈도 (비율)	83 (44%)	86 (46%)	144 (77%)	8 (4%)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 중 강간 48%,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7.7%였다.

**표6.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유형**

(건수/비율 %)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모욕, 비난	성관계 강요	미파악	합계
48 (60.8%)	1 (1.3%)	7 (8.9%)	14 (17.7%)	1 (1.3%)	3 (3.8%)	5 (6.3%)	7	187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 중 신체적으로는 상해, 임신, 인공유산 등의 피해가 나타나며, 심리적 피해로는 공포·두려움, 불안, 우울·무기력 등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단절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학교 및 직장 등을 중단하면서 생기는 피해도 있었다.

표7. 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구분	상해	질병	임신	인공유산	기타
빈도	18	0	9	7	3

표8. 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빈도)

우울·무기력	불안	모욕굴욕	무력	자존감 상실	수치심	자책감	공포·두려움	적대감	죽고싶음	자해자살 시도	기타
41	61	39	22	35	34	22	77	3	12	4	2

표9. 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구분	대인관계 어려움, 단절	학교·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중단	기타
빈도	11	17	1

폭력이 발생할 당시는 37명이 ‘더 심해질까봐 참음(그냥 당하고 있음)’ 를 비롯하여 소극적 대응을 한다고 응답했고,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역시 30명이 응답하여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폭력이 발생할 당시의 대응방식 중 ‘경찰신고’ 는 11명, ‘주변인 도움요청’ 은 16명인 점은 여전히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10. 당시 대응방식 (중복응답)

(빈도)

잘못했다고 하거나 무조건 빔 (달랠)	더 심해질까봐 참음 (그냥당하고 있음)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거부의사 표현	맞서 대응함	주변인 도움요청	경찰신고	기타
19	37	12	30	12	16	11	5

표11. 상담 전 대응 방식 (중복응답)

(빈도)

병원치료	경찰신고	법정대응	대화시도 (설득)	주변인 도움요청	사과요구 (각서, 내용증명등)	이별시도	치료(상담) 권유	참고기 다림	타기관에 상담등 지원요청	기타
12	23	8	30	23	9	29	3	6	9	10

상담 전 대응으로는 대화시도가 30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별시도 29명, 경찰신고 23명, 주변인 도움요청 23명으로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응과 상담 전 대응의 응답의 차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자원을 이용하여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 3. 상담 속에 나타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 1) 뉴스 기사와 인터넷 정보를 통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인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데이트폭력’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생소한 단어였다. 입에 오르기 불편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스토킹’ 역시 마찬가지였고 연예인이나 겪는 피해정도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들 모두 여성들이 주로 겪는 피해이며, 우리의 일상을 두렵거나 괴롭게 하여 위축시키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진행은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한편 여성폭력의 실체를 이제야 제대로 보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마저 든다.

“데이트폭력”, “스토킹”이 범죄로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결단으로 끊을 수 있는 것 사소한 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선택으로 몰아가다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4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건들이 개인의 결단,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를 겪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여 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자신의 상황을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름붙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례1]** 페이스 북에 돌아다니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글을 보고 내 상황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2]** 몇 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인데 둘의 관계에 큰 문제를 못 느꼈다. 문자를 100통 넘게 하는 거, 집착하는 게 사랑인줄 알았고 전혀 그거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사례3]**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헤어지자고 한 후 수신거부를 하고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랬더니 집, 직장으로 찾아와서 좋아하니 헤어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찾아올 때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 아는 사람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마침 데이트폭력에 대한 살인사건 보도가 많이 나왔다. 혹시나 나한테도 복수할까봐 두렵고 무섭다.

[사례1]과 [사례2]는 폭력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하게 된 사례이다. 연인 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알았고, 남자친구의 집착적 행동을 사랑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사례3의 경우는 언론보도로 인해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경우이다. 언론이 새로운 이슈와 여론 조성 측면에서의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공포감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보도는 살인사건으로 자극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상담 속에서 발견하는 불편한 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위로 하는 경우이고, 반대의 경우는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는 것이다. 물론 상담실에 접수되는 사건은 살인에 해당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극단적인 사건의 가해자는 극소수의 비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몰아가고, 여성폭력의 현실을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넓어진 만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도록 좋은 정보를 만들고, 전달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은 관계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밀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한다.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지 않게, 언론에 나오는 사건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민감성을 높이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차이

데이트관계에서 헤어지자고 한 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하며 상담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본회 상담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둘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관계의 단절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다만 차이점은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명명함에 있어서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였다. 가장 큰 지점은 데이트상대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였다. 이미 헤어졌거나 헤어지자고 한 후 결심을 굳힌 경우는 “스토킹”이라 명명하였고, 두려움으로 인해 헤어질 결심을 쉽게 못하여 관계 지속선상에 있는 경우,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는 “데이트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사례4]**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에 스토킹이 너무 심각해서 두려워서 다시 만났었다. 역시 두려웠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걸 모른다. 그 사람은 그걸 알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례4]의 경우 헤어지는 이유를 데이트폭력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는 상대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표현하였다. 관계당시에 알고 있던 집, 학교, 직장 및 대인관계 등 ‘아주 일상적인 정보’는 일상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을 심각하고 두려운 것으로 만들고, 피해의 시작 여부와 상관없이 두려움을 갖게 한다.

#### 4.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시작된 시기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소위 ‘이별 폭력’이 데이트폭력의 주요 형태인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다. 실제 몇 년 전 데이트폭력을 수사하던 모 경찰서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헌신적 애정공세를 퍼던 남성이 실연당한 뒤 보상심리로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별범죄를 예방하려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 일방적 이별통보보다는 남성에게 서서히 정리할 시간을 줘 상실감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주로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그전에 폭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상황부터 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졌고, 연애기간 중에도 폭력은 있었다. 이 점은 본회 상담사례와도 공통된 부분이다. 연애 기간 전반을 통해 직접적인 폭력이 있었거나 감시, 통제 등 다양한 방식의 폭

력이 있어왔다.

### 1) 연애폭력, 관심이고 사랑인줄 알았던

**[사례5]**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계속 연락이 왔고 마음에 든다며 자기랑 만나자고 했다. 어느 날 들이 사귄다는 소문을 냈고, 내가 아니면 활동을 그만 두겠다, 나 아니면 죽겠다고 했고, 관심 받는 게 싫지 않았다. 스토킹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지 몰랐고, 지금 생각하니 그것부터가 스토킹이다. 나 때문에 활동을 그만 둔다니, 그만두면 괜히 내가 미안해져서 사귀게 된 것이다.

[사례5]는 알게 된 처음부터 호감을 보였고, 만나달라고 하더니 “사귄다”고 소문을 내고, “만나주지 않으면 활동을 그만 두겠다”, “죽겠다”는 말을 한다.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도 상대의 행동을 일방적이라고 인지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를 처음부터 폭력적인 사람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호감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만큼 연애 초기이거나 호감을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심이나 적극적인 구애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이후에 나오는 사례들도 [사례5]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처럼 집착적 행동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폭력을 써도 용서해 주거나 이해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애가 지속중인 경우라면 “집착이 심하다” 정도의 표현은 쓸지 언정 “스토킹”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는 것과 같다.

**[사례6]** 11월부터 만나서 5개월간 만났고 나한테 남자가 문자가 온다며 그걸로 뭐라고 하더니 그렇게 다투다가 폭행까지 당하게 됐다. 당시에 남자친구 뺨을 때렸는데 남자친구는 나를 폭행까지 했다.

**[사례7]** 1년 좀 넘게 만났는데 3개월 때부터 머리를 때리고 이상한 행동을 조금씩 했었다. 그날도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집 앞으로 찾아갔더니 욕하고 밀치고, 물건을 던져서 벽에 큰 구멍이 났다. 나한테 던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한테 던지지는 않았다. 놀라서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고 칼을 들었더니 칼을 뺐었다.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결혼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

**[사례8]** 사귀지 8개월 됐는데 처음부터 욕하고 실랑이하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화를 내면 울면서 사과를 해서 만났다. 몇 주 전에 칼로 자해를 하고 손목을 긋고 나 없으면 죽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칼을 내 배에도 들이댔다. 그날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사례6]은 만난 지 5개월 만에 폭력이 있었고, [사례7]은 3개월째부터 이상한 행동이 있었고, 1년 정도 만난상황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이 있었다. 위 사례에서 폭력이 시작된 시점은 데이트관계 초기부터이고, 그 유형은 집착, 통제, 폭언, 신체적 폭력 등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자신들이 겪은 것이 폭력임을 인지하였다.

[사례6]은 남자한테 온 문자 메시지로 인해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였다. [사례6]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며,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 이라고 하며 폭력을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주장한다. [사례7]의 경우는 상대의 분노표출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신체적 폭력에 익숙해 있는 경

우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로인해 공포에 떨었고, 위협을 위한 행동이라면 신체적 폭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폭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8]은 관계 초기부터 있었던 욕과 실랑이는 분명 가볍게 지나갔지만 가볍지 않은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이다. 자주 있었다고 해서 폭력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대의 자해와 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폭력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통제해왔던 것은 사과하면서 울기, 죽겠다는 말 인 걸로 보인다. 내담자는 정작 폭력을 당하면서도 상대가 나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 2) 헤어지자고 한 후, 또 다른 이유가 된 폭력

최근 이별폭력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헤어지자고 한 후 돌변해서 폭력을 썼거나, 이미 조금씩 있어왔던 폭력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괴롭히는 경우이다. 그 전까지는 폭력이 간헐적이 발생되었다면 헤어지자는 말이 폭력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발생한 폭력은 그동안 있었던 형태보다 훨씬 다양화되고 강도 높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 발생하는 폭력, 즉 상대의 의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공포나 두려움이 될 만한 방법을 선택한 후 행사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9] 집착은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때부터 있었고, “개망신을 시켜주겠다”, “칼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고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후부터 스토킹이 점점 더 심해진다.

[사례10] 8년을 만났는데 헤어지자고 하자 몇 개월 전부터 협박을 했다. 때리고 술병을 깨서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 전화, 문자를 수백 통씩 보내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친구들에 대해 했던 얘기들을 하여 이간질 시켰다. 어머니가 지병이 있는걸 알고 알리겠다며 노력하면 돌아올 걸 안다고 한다.

[사례9]는 교제초기부터 집착이 이미 있었고, 관계 중에는 신체적 폭력, 협박, 통제가 점점 심각해서 헤어지자고 한 후부터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는 사례이다. [사례10] 역시 헤어지자고 한 이후부터 남자친구로부터 신체적 폭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이간질, 아픈 어머니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 각각의 데이트상대자들은 헤어지는 이유가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여 만남을 지속을 하고자 하였다. 헤어지자고 한 이후의 폭력은 관계가 끝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분노와 보복의 의미 일수도 있지만 떠난 상대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에 대한 이간질은 가벼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악화가 데이트폭력에서는 내담자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한편 내담자는 데이트상대자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영상물 유포 협박 등을 할 경우 자신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미지의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이를 멈추게 하고자 관계중단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데이트폭력은 여성들에게 ‘헤어질 권리’마저 포기하게 든다.

## 5.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

### 1) 신체적 폭력 및 폭언 등

드라마나 영화에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사를 외치면서 뺨을 때리는 장면은 폭력을 로맨틱하게 묘사하며, 데이트관계에서 ‘사랑하면 폭력은 용서하거나 감내해야 하는 것’ 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킨다.

실제 데이트폭력 상담에서 신체적 폭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서 보여 지는 것과는 다르게 데이트관계는 로맨틱하지도 않고 드라마 주인공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각인 시킨 이미지만 기억하며 폭력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동시에 데이트폭력을 허용하거나 묵인하게 된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중 데이트폭력<sup>5)</sup>이 있다고 한 경우 중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52.6%(113건)을 차지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폭력은 음주와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곧 있을 결혼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이나 폭언 외에도 다양한 폭력이 관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가해자들이 말하는 폭력의 이유는 “너를 사랑해서”, “니가 잘못해서”, “자신의 화를 돋군다”, “자길 의심해서” 등이었으며, 그 기준은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애기되고 있었다.

5) 2014년 1월-12월까지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중 데이트폭력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피해자의 82.8%(17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이 113건(52.6%), 성적 폭력이 88건(40.9%), 경제적 폭력이 24건(11.2%)로 나타났다. 이 중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58.1%로 복합적인 양상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트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관계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밀도, 즉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2014년 데이트관계에서의 폭력의 유형 (복수응답, %)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113	88	178	24
52.6%	40.9%	82.8%	11.2%

오히려 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과를 해서 용서해 주거나 주변에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다.

**[사례11]** 3-4년 사귀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첫 폭력이다. 첫 폭력인데 녹음해서 전송을 했더니 사과를 했다. 결혼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고, 이런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사례12]** 1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고, 어제도 폭행하면서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녔다. 때리면서 내가 잘못해서 때린다고 한다.

**[사례13]** 가끔씩 폭행이 있었고, 이유는 사랑해서 때렸다고 한다. 임신시켜서 결혼하겠다고 한다. 뭐했냐고 물어보면 자길 의심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른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말할 데도 없다. 동거중인데 이 사람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이 사람은 경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례14]** 40대이고 4년 째 교제중인 남자친구에게 최근 폭언을 들었다. 자신의 화를 돋운다며…… 남자친구는 자주 욕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매달 받고 있는 상태라 다 받으려면 1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위의 사례 모두 데이트 관계 중에 신체적 폭력과 폭언 등이 있었음에도 데이트 상대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쪽의 선택을 하였다. 이미 상대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했다면 이것은 한 번의 폭력을 허용한 것이 되고, 데이트 관계에서 가해자의 자의적인 기준, 기분여하에 따라 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 2)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으로 작용하는 성적 학대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인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데이트관계임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고, 성폭력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임신, 낙태, 성관계 사실 폭로,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이다. 성적인 피해는 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결과 발생한 성적인 피해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된다.

**[사례15]** 동창과 애인관계로 1년을 만났는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걸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한테 알려줬다면서 동영상 유폐하겠다고 협박한다.

**[사례16]** 결혼을 전제로 사업 대출을 8천만원이나 받아줬다. 더 이상 대출을 못 받아준다고 하니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하면 폭언과 막말을 한다. 회사에 와서 알려줬다고 협박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 같고, 나는 관계단절이 어렵다.

**[사례17]** 외국에서 만나게 된 사람과 사귀게 됐는데 임신까지 하게 됐다. 임신 초기라서 합의하에 약을 복용했고, 그 이후부터 여러 사실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됐다. 헤어지자고 하니 동영상과 임신했던 사실을 유폐해서 망신 주겠다고 한다.

**[사례18]** 사권지 1년 됐고, 2-3회 폭력이 있었다. 머리채 잡히고, 발로 차였다. 성관계시 피임도구 쓰려고 하면 “자기만 생각 한다”며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 임신이 됐는데 “중절했다. 생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고 괴롭힌다. 헤어지자고 하니 “임신, 낙태를 알려줬다”고 한다. 헤어지는 걸로 하고 성관계는 계속 요구하며 즉시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유폐하겠다고 한다.

데이트관계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찍었거나,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상담 사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다. 영상을 촬영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 받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나 통제의 수단이 된다. 유포했을 때 가해자 처벌보다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여성이 느끼는 굴욕감이나 피해는 남성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이 여성에게 더 큰 이유는 여성의 성을 대하는 성윤리의 이중적 잣대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임신, 낙태,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해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은 여성의 몸에 대한 윤리적 비난으로 이어지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이미지화 되어 낙인이 된다.

### 3) ‘너 아니면 죽겠다’ 자살·자해 협박

데이트관계에서 이별을 요구할 때 ‘너 아니면 안 된다’, ‘헤어지면 죽겠다’ 는 말은 데이트폭력 상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 상대가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자해 협박은 폭력과 동일한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요구하는 내담자들의 의지를 중단시키는데 자주 이용되며, 이별을 요구하는 내담자의 행동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죽겠다’ 고 하거나 자살이나 자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누군가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로써도 두려움을 갖지만 ‘죽거나 다치는’ 이유가 이별 요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면 선택을 넘어서서 포기를 생각하게 된다.

**[사례19]**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목을 매서 죽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날도 목매는 걸 보라고 하고 가서 말리려고 하면 칼을 들고 못오게 위협을 했다. 그날은 그렇게 됐지만 베란다에서 죽겠다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동생이 말려서 종료된 적도 있다. 자기를 안받아주면 죽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헤어지자고 하면서 차에서 얘기하자, 집에서 얘기하자며 질질 끌고 다닌다.

**[사례20]** 1년 정도 만났고, 올해부터 협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반복한다. 처음에는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죽겠다고 한다. 얼마전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했더니 우리엄마한테 문자를 했다. 나도 남자친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나로 인해 죽을 까봐 걱정된다.

**[사례21]** 사귀지 5개월. 남친이 자주 흥분하고 화를 낸다. 맞진 않았지만 알바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고는 아르바이트를 못가게 하고, 화가 나면 자해를 하면서 화를 내고 내 앞에서 쓰러진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성관계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한다.

자해나 자살 협박은 상대가 잘못될 경우 죄책감을 갖게 되므로 직접적인 폭력사용보다 훨씬 위력적으로 상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보통 폭력을 정의할 때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해나 자살 위협은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살이나 자해 위협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이고, 신체적 폭력보다 심각한 심리·정서적 상처를 준다.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상당한 정도의, 변형된 폭력인 것이다. 폭력의 변형은 죽겠다는 위협이나 자해 외에도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 4) 주변 사람에 대한 협박 및 위협

관계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sup>6)</sup>다는 뜻으로 관계는 애정을 토대로 형성되었을 때 긴밀성의 정도가 높아진다. 데이트 관계인 경우 서로 얽히게 되는 것은 둘 뿐만이 아니라 알게 된 개인정보, 관심사, 취향,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연관된 정보와 공유했던 일상이 된다. 이것은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연결된 모든 것이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둘의 관계정리로는 끝나지 못하고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둘의 입장이 다를 때 주변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의논상대가 되거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겠다고 하며 상대를 통제하는 경우이다.

**[사례21]** 데이트 중일 때도 폭언이 있었고, 이별 통보 후부터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함께 사는 언니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

**[사례22]**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에 스토킹이 너무 심각해서 두려워서 다시 만났다. 역시 두려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있고, 가족들은 다시 만나는 걸 모른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한테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사례23]** 동창과 애인관계로 1년을 만났는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걸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한테 알리겠다면서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아이들 전화 번호도 알고 있어서 그게 더 겁나요

그중 주변사람들을 이용하여 상대를 통제하고자 할 때 가족, 친구 등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주변 사람에게 해코지하겠다

6) 관계(關係) :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출처 : 다음 국어사전)

고 위협하여 관계중단을 취소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내담자들은 자신이 겪는 폭력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갔을 때 더욱 힘들어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해치겠다는 직접적인 위협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 충격을 주겠다, 다시 만나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서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이고, 상당수는 통제력은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을 겪는 경우가 상담사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즉시 여러 가지 피해를 직접 겪는다. 피해의 정도도 20-30대나 비혼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비교할 때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괴롭힘의 내용은 협박, 폭력, 성폭력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고 지속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보통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만나는 것을 외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외도로 인식되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 알려져 결혼관계의 문제가 될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도덕적 비난을 두려워하여 알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 5) 경제적 피해 동반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의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헤어지면서 데이트상대자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는 등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동시에 학업이나 취업 등의 피해까지 있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헤어지는데 있어서 폭력도 큰 사유이지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주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되는 경우는 관계 단절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더 늘어나게 된다. 사례24, 25, 26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해 헤어지지 못했거나 헤어졌어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례24]** 애인과 동거하던 중에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귀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빌려준 돈이 있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많다.

**[사례25]** 데이트관계였던 때에 5천 보증을 서줬고, 내 명의 차를 아직 남자가 쓰고 있다.

**[사례26]** 결혼을 전제로 사업 대출을 8천만원이나 받아줬다. 더 이상 대출을 못 받아준다고 하니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하면 폭언과 막말을 한다. 회사에 와서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 같고, 나는 관계단절이 어렵다.

**[사례27]**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2년 정도 만났을 때 헤어지자고 하면서부터 폭행이 있었다.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가게를 그만두고 숨어 있다가 직장에 6개월 전부터 다니고 있는데 용케 알고 찾아와서 백화점에 와서 기다린다고 한다. 직장동료들 전화를 받고 일을 안 나갔지만 직장을 또 옮기기는 쉽지 않고, 이사는 해도 아이 학교는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사례27]의 경우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숨어 있다가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노출된 사례이다. 이사는 한다 해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 때문에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 6.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기

1)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존 상담소의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성적인 폭력 외에도 신체적 폭력, 협박, 감시, 통제, 감금, 폭언, 주변인에 대한 위협, 금전 갈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일상에서 폭력을 제거함은 물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고민을 하거나 삶의 기반을 바꿔야 할 정도 많은 것을 흔드는 일 이었다.

상담실에 데이트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폭력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폭력에 저항하거나, 폭력에 순응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식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상담에서 호소된 데이트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주요 노력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기,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직장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폭력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 말하기, 정신치료, 여성폭력 관련 기관 등에 상담요청하기 등이 있었다. 상담소와 상담 이후에는 주변의 이 있는지 모색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데이트폭력이나 전애인의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데이트폭력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지, 데이트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소나 경찰 등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gender violence)의 맥락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상담소들이 좀 더 체계화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데이트 상대자로부터 겪는 다양한 폭력을 지원하고 드러내는데 있을 것이며, 제도화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현재 활동을 재조명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2)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나 대응이 쉽게 실패하는

이유에는 데이트폭력을 둘러싼 시선과 담론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전과자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눈이 뒤집혀서 주변에 해코지 할까봐 대응을 못하겠다”고 한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사회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대하는지 알기 때문에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심각한 피해나 협박이 있어야 처벌된다고 한다” 등의 경찰신고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더더욱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느끼게 될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연인관계의 살해 위협,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은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신고를 한다는 행위는 그 정도의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경우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조차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데이트폭력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 ‘개인의 결단으로 벗어나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 상대를 처벌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는 것은 훨씬 어려워진다. 이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만드는 상황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데이트폭력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벽은 매우 높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인식 개선에는 언론이 할 수 있는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동안 다뤄오던 방식, 심각하고 선정적인 사건들만 다루던 것은 데이트폭력을 일상으로부터 분리할 위험이 있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보도는 어떤 것인지 고민하여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기 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폭력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예방적 성격의 보도를 고민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지집단이 있는 것은 폭력단절에서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는 개인의 폭력피해와 민감한 사생활이 알려지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까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만약 사회정서가 가해자의 이런 협박을 수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어려움 없이 말 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지지집단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가보다 도움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사회적 지지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움요청이 좌절되었거나 실패했을 경우는 심리적 고립, 다음은 사회적 고립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런 피해자가 심리적,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데이트폭력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 MEMO

---

# MEMO



### ‘사랑’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데이트폭력에 맞서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일상적 관계의 성찰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1회적 행사가 아닌 한국여성의전화 32년의 역사가 담긴 힘 있고도 의미 있는 자리이다. 그동안 한국여성의전화가 펼쳐온 ‘안녕데이트공작소’, ‘데이트UP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중캠페인 등의 데이트폭력 근절 활동들은 피해자 지원과 대응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화영님의 발제문은 상담창구에 들어온 데이트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토론자로서 발제자의 분석에 전적인 동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제에 덧붙여서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이 문제에서 겪는 딜레마 등을 나누고자 한다.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장에서 뵙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 해당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오신 분들이기에 오늘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한편, ‘토론회의 계절’이라는 10월에 여러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유익한 토론회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학생·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바람이 있다. 더욱이 오늘 주제인 데이트폭력은 상담소

에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활동가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경험이자 당면 과제이다. 데이트는 10~20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더 많은 말하기와 대응책들이 여기저기서 논의되어야한다. 특히 데이트폭력 문제에서 법적인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우리들의 솔직한 고민과 혼란, 그리고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데이트강간의 개념

'이름짓기'는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십여 년 전부터 여성운동에서 수동적이고 나약한 이미지의 '성폭력피해자(victim)'란 용어를 '생존자(survivor)'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것도 생존자들이 갖는 치유에의 강한 힘과 용기, 지혜, 그리고 권리를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발제문에 인용된 사례에서도 보듯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어쩌면 문제해결을 위한 첫 출발점일 수 있다.

발제문에서는 “데이트성폭력은 데이트 관계 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데이트관계 내의 폭력을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만 환원하는 즉 ‘피해’를 성적인 침해의 범주로만 한정해 버린다”며 데이트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며, 오늘 토론회의 발표내용은 데이트성폭력이라기보다 데이트폭력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한다고 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1992년 <데이트 강간 세미나><sup>7)</sup>를 할 당시에는 데이트성폭력이 아닌 데이트강간으로 명명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

7)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데이트 강간 세미나 자료집>.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경하던 때여서 강간이라는 용어에 성폭력을 총칭해서 일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언론보도와 교육활동 등을 통해 데이트강간문제가 확산되면서 관련 상담도 늘어나고 피해유형도 넓어졌다. 그 결과 1992년 하반기부터 상담통계에 데이트성추행 항목을 추가로 집계<sup>8)</sup>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성폭력으로 명명하게 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듯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 ‘데이트강간’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특정 용어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데이트강간이 데이트성폭력에 포함되고 데이트성폭력이 데이트폭력 안에 포함되듯이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발제문에 2014년 7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한국여성전화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상담 총 187건 중 144건(복수응답)이 ‘정서적 폭력’ 피해로 전체의 77%<sup>9)</sup>를 차지한다고 소개되어있다. 그런데 정서적 폭력의 의미나 구체적인 특성 등은 빠져있어 아쉽다. 데이트는 친밀한 관계에서 많은 정서적 교류를 나눈다는 점에서 정서적 폭력피해는 물리적, 성적 피해 못지 않는 비중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장애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을 ‘일상폭력’이라는 말을 붙여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일상폭력의 유형을 공간침해폭력, 매니저 폭력, 분위기 폭력, 얼떨결 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나누어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다.... 매니저폭력은 장애여성 가족, 친구/동료, 서비스제공자 등이 장애여성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사를 묻지 않고 혹은 상관없이 결정해버리고 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분위기

8) 한국성폭력상담소(1993), <나눔터>, 제7호, 4쪽.

9) 2014년 통계에서는 정서적폭력이 전체 데이트폭력의 8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발제문 각주5번)

폭력은 장애를 이유로 (가족 등)모임이나 인간관계에서 은근히 배제하는 경우에 쓰인다” 10)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여성들이 겪는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

덧붙여 본 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에 열린 데이트성폭력 두 번째 토론회인 현장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결과가 이번 발제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토론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확장해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 데이트폭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들이 짚어봐야 할 혼란과 갈등의 지점은?

발제자께서 결론에 제안한 것처럼 데이트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상담소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토론자로서 다음과 같은 논의거리를 덧붙여보고자 한다.

오늘 발제문에 소개된 유형별 데이트폭력 사례들은 대부분 이견 없이 데이트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피해자가 원하면 법적고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상담현장에서도 피해로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데이트폭력 피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퍼지고 있는 섹스팅이나 채팅앱, 몸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진행한 ‘2013년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에서도 연애를 하면

---

10) 배복주(2011), “장애여성과 폭력,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와 앞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2011 여성회의 : 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 189쪽.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고구마·니아(2004), “일상을 정치화하기 : 당신들의 2인치”, 잡지<공감> 제7호, 83-100쪽. 장애여성공감.



서 ‘커플 앱을 사용해봤다’가 36.6%, ‘스킨십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다’가 13.0%, ‘성적인 내용의 문자(채팅)를 주고받았다’가 10.4%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부 성인들은 데이트를 하는 친밀한 사이에서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벗은 모습을 찍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헤어지려고 할 때 어느 한쪽이 이를 빌미로 연애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스토킹<sup>11)</sup>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의해 그 자료들이 SNS상에 올려져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번져나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SNS상의 자료들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아예 문제제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위협요소가 된다. 가해자에게는 서로 좋아서 했다는 물적 증거가 되는 반면,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심과 비난을 받고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맥락이 지워진 채 물증으로 남은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버린다. 그리고 개별적 대응을 넘어 고소 등으로 ‘사건화’ 되었을 때 돌이 나뉘던 민감한 감정과 언어, 행동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주변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직장이나 학교 등 공동체 내에서 생긴 문제일 경우, 피·가해자들의 주장이 전달되면서 주변인들

---

11)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에인’ 관계인 경우는 총 645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에인 관계에서 상해 사건은 하루 평균 7.8건, 폭행은 7.9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은 3.3건, 강간·강제 추행은 1.2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력, 상해, 살인 등을 모두 합친 에인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건수는 매년 평균 7,355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스토킹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지만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5. 10. 12)”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012060207536>

도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이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뒷전으로 밀리고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데이트폭력 문제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논쟁지점들이 많다.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이분화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역동이 존재하는 데이트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이를 침해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문화의 구조,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이 성차별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임을 드러내려했던 우리 여성운동이 보지 못했거나, 잘못 보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무섭고 기계적인 개념’<sup>12)</sup>으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닌지를 성찰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 ● ‘여성들이 반격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200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여성들이 반격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서 반격의 의미는 직접적인 몸의 반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부당한 처우에 ‘분노’ 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를 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문제에서는 왜 나의 파트너가 연애평정에서 은연중에 나를 무시하거나 감정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헤어질 권리까지 박탈하는지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태산보다 더 소중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며 당당한 데이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보자. 진정한 변화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

12) 이윤상·이임혜경·문채수연·배복주(2011), “내가 생각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방향”, <반성폭력> 제2호, 개소20주년 특별호, 37-44쪽.

일상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임을 그동안의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제, 거침없이 새로운 데이트문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자!

---

# MEMO

---

# MEMO



## 친밀한/관계, 그 안에 교차되는 위치읽기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먼저, 발제글을 작성하신 유리화영소장님 감사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은 ①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데, 관계에서 친밀하다는 건 무엇인지? ②친밀한 관계에서 성별권력만으로도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 과연 발생하는 것인지? ③성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의 범주를 확장했다면, 이를 데이트 폭력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등이다.

복잡한 고민 때문에 수학적공식을 풀이하듯 생각을 풀어나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토론자는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과 위치성에 대한 짧은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 1) 관계에서의 친밀함

인간의 삶에서 관계맺기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연애/우정/결혼/가족/직장 등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신뢰가 생기면 ‘친밀하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게 된다.

발제글에서, ‘데이트 폭력’에서 ‘데이트’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데이트는 주로 연인 간에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바라보고 있으며, 폭력은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데이트 폭력이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주되게 성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피/가해자는 친밀함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가해자는 친밀함이 폭력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저항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연결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폭력이 개입될 때, 두 사람 간에 만들어진 위력/힘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이나 정책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과연 데이트 폭력이라고 구분하여 표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된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그녀들이 놓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적장애여성의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존중받거나 선택받은 경험이 없기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자신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인 몸을 활용하여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가해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친밀하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지적장애여성은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대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지적장애여성은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적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상대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거나 기대하면서 권력(힘)관계에 종속되어 있거나 폭력을 언어화시키지 못한 상태로 착취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 방식으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장애여성들과 달리 지적장애여성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없는 상태로 관계가 지속된다는 차이가 있다.(정보와 사회적 관계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 2) 관계, 그 안에 교차되는 위치읽기

지속되는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서사가 있고 서로 의존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체성이나 위치성에 따라 폭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애 연애관계에서는 (발제 글의 여러 사례에서 보여지 듯) 성별권력관계가 작동하고 그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물론 그 관계에서도

두 사람간의 서사에서 때론 역전되기도 하고 다른 차이가 존재할 때 피/가해의 양상은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다.

관계에서 성별을 포함해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재산이나 소득,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이주 등의 사유로 관계의 위계나 권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누적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낮은 위치성을 갖게 된다. 낮은 위치성은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폭력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상황이 관계에서 어떻게 위치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데이트 성폭력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다시 명명하게 되었을 때 데이트 성폭력피해자가 성적폭력 외에도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데이트라는 친밀한 관계 안에 놓여지게 되는 당사자의 위치성과 다양한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관계에서 위치한 사람의 정체성과 상황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중지나 단절을 요구하거나 선언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할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한다면 좀 더 데이트 폭력의 논의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MEMO

---

# MEMO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십대 성문화 읽기

박현이(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성적 실천과 성태도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중요하다. 이에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4년부터 3년 간격으로 청소년 성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를 4차례 실시해왔다(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매회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고, 대상은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 총 1,300여명과 고등학교 2학년 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원고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자료 중 2010년과 2013년 자료를 재구성해서 작성하였다.

### 1. 십대들의 발달 과업으로서 연애가 보편화된 상황이다.

십대들은 대중매체, 포르노 등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미 연애 및 성행동 등 다양한 성적 실천을 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 의하면 십대들의 연애 경험 비율이 여학생 46.4%, 남학생 46.2%로 연애가 십대들의 발달과업으로서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2007년 55.6%, 2010년 60.6%). 연애 경험율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애를 할 때 남자에게는 경제력, 여자에게는 외모와 착한 성격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이 제한된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또래들 사이에서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연애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1. 연애 경험 유무**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있다	389 (57.3)	341 (60.6)	274 (55.0)	319 (56.1)	350 (58.4)	415 (62.5)	- -	- -
과거했음	- -	- -	- -	- -	- -	- -	205 (33.7)	189 (32.1)
현재함	- -	- -	- -	- -	- -	- -	76 (12.5)	84 (14.3)
없다	290 (42.7)	222 (39.4)	224 (45.0)	250 (43.9)	249 (41.6)	249 (37.5)	327 (53.8)	316 (53.7)
합계	679 (100.0)	563 (100.0)	498 (100.0)	569 (100.0)	599 (100.0)	664 (100.0)	608 (100.0)	589 (100.0)

※ 출처: 2013년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 친밀한 관계를 위한 소통의 통로가 없을 경우 신체접촉과 성적 행위에 더 몰두 할 수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고,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이 예상 가능한 연애와 스킨십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십대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연애의 광범위한 유행화는 스킨십의 증가와도 밀접히 연결되는데, 이는 연애문화에서 신체접촉이 가지는 의미가 점차 보편화,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특히 첫 성관계 상대가 친구(2010년 중등 64.7%, 고등 64.7%)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는 연애 비율의 증가된 현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1) 데이트 시 경험한 신체 접촉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신체접촉을 하고 있으며 ‘손잡기’, ‘껴안기’는 중학생 비율이 높고, ‘키스’, ‘몸만지기’, ‘성관계’는 고등학생 비율이 높아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접촉의 수위가 달라지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킨십에 대한 자신의 기준과 책임, 의사소통 훈련 등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2. 데이트 시 신체접촉

	중			고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없다	27	29	56	23	18	41	50	47	97
	15.5%	11.9%	13.4%	7.2%	5.8%	6.5%	10.2%	8.5%	9.3%
손잡기	71	112	183	65	70	135	136	182	318
	40.8%	45.9%	43.8%	20.4%	22.7%	21.6%	27.6%	33.0%	30.5%
키스	20	24	44	74	68	142	94	92	186
	11.5%	9.8%	10.5%	23.3%	22.1%	22.7%	19.1%	16.7%	17.8%
껴안기	44	65	109	71	93	164	115	158	273

	25.3%	26.6%	26.1%	22.3%	30.2%	26.2%	23.4%	28.6%	26.1%
몸 만지기	2	3	5	27	12	39	29	15	44
	1.1%	1.2%	1.2%	8.5%	3.9%	6.2%	5.9%	2.7%	4.2%
성관계	3	1	4	51	35	86	54	36	90
	1.7%	0.4%	1.0%	16.0%	11.4%	13.7%	11.0%	6.5%	8.6%
기타	7	10	17	7	12	19	14	22	36
	4.0%	4.1%	4.1%	2.2%	3.9%	3.0%	2.8%	4.0%	3.4%
합계	174	244	418	318	308	626	492	552	10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십대 청소년들은 친밀한 관계를 위한 소통의 통로가 없을 경우 신체접촉과 성적행위에 더 몰두할 수 있다. 또한 멋진 이벤트와 비싼 선물공세, 스킨십만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십대 청소년들의 교제가 인격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 2) 사귀는 사람과의 첫 성관계 시기

남녀 모두 ‘1주일 내’ 7.0%, ‘1개월 내’ , ‘3개월 내’ 가 각각 3.1%, ‘6개월 내’ 2.2% 순으로 나타나 성관계를 한 중학생들의 대부분은 사귀기 얼마 안 돼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귀는 사람과 성관계를 경험한 고등학생 중 첫 성관계를 한 시기는 ‘3개월 안에’가 12.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개월 안에’ 9.4%, ‘사귀기 전’이 7.5%, ‘6개월 안에’ 6.3% 등의 순이었다. 첫 성관계하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보



다는 성에 대한 호기심, 성충동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들에게 성적의사결정 훈련 및 성행위의 준비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3. 연애 중 첫 성관계 시기**

	중			고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귀기 전	0	0	0	12	7	19	12	7	19
	0.0%	0.0%	0.0%	9.2%	5.6%	7.5%	5.2%	2.8%	3.9%
만난 첫날	3	0	3	10	1	11	13	1	14
	3.0%	0.0%	1.3%	7.6%	0.8%	4.3%	5.7%	0.4%	2.9%
1주일 내	8	8	16	10	5	15	18	13	31
	8.1%	6.3%	7.0%	7.6%	4.0%	5.9%	7.8%	5.2%	6.4%
1개월 내	3	4	7	15	9	24	18	13	31
	3.0%	3.1%	3.1%	11.5%	7.3%	9.4%	7.8%	5.2%	6.4%
3개월 내	4	3	7	15	16	31	19	19	38
	4.0%	2.3%	3.1%	11.5%	12.9%	12.2%	8.3%	7.5%	7.9%
6개월 내	3	2	5	9	7	16	12	9	21
	3.0%	1.6%	2.2%	6.9%	5.6%	6.3%	5.2%	3.6%	4.4%
1년 이내	2	1	3	7	3	10	9	4	13
	2.0%	0.8%	1.3%	5.3%	2.4%	3.9%	3.9%	1.6%	2.7%
기타	76	110	186	53	76	129	129	186	315
	76.8%	85.9%	81.9%	40.5%	61.3%	50.6%	56.1%	73.8%	65.4%
합계	99	128	227	131	124	255	230	252	4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 성차별적인 문화와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비주체적인 상황

에서 성경험을 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 중학생의 1.2%, 고등학생의 12.9%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1) 첫 성관계 동기

첫 성관계의 동기에 대해 묻는 문항에, 남녀청소년 모두 ‘서로 좋아해서’ 혹은 ‘술 마신 상태에서’ 첫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과 비교해 ‘술 마신 상태여서’ 혹은 ‘충동적으로’ 첫 성관계를 한 경우가 많았다.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상대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우가 많았다(여 15.8%, 남 6.3%).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 조사에서는 ‘술 마신 상태에서’ 첫 성관계를 가진 여자청소년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오히려 남자청소년을 큰 폭 차이로 앞섰다.

성관계하는 이유로 ‘거절하기 힘들어서’ 성관계를 한 경우도 여성이 더 많다(여 36%, 남 2.7%). 남성(7.4%)보다 십대 여성(28.6%)이 강제적 성관계를 더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자 청소년들이 순응과 소극성을 강요하는 사회의 차별화된 성의 이중구조에 길들여져 성적 갈등 상황에서 주체적인 성태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첫 성관계 동기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술마신 상태	40 (26.7)	9 (18.4)	24 (28.6)	3 (12.5)	17 (19.5)	4 (12.9)	22 (19.6)	21 (36.8)
충동적	23 (15.3)	3 (6.1)	18 (21.4)	5 (20.8)	13 (14.9)	3 (9.7)	21 (18.8)	6 (10.5)
서로 좋아해서	69 (46.0)	22 (44.9)	33 (39.3)	6 (25.0)	45 (51.7)	13 (41.9)	44 (39.3)	12 (21.1)
상대가 원해서	11 (7.3)	13 (26.5)	6 (7.1)	3 (12.5)	4 (4.6)	5 (16.1)	7 (6.3)	9 (15.8)
내가 강제로	- -	- -	- -	- -	- -	- -	2 (1.8)	1 (1.8)
돈거래	3 (2.0)	0 (0.0)	0 (0.0)	1 (4.2)	2 (2.3)	1 (3.2)	1 (0.9)	0 (0.0)
강요(성폭력)	0 (0.0)	2 (4.1)	1 (1.2)	4 (16.7)	1 (1.1)	3 (9.7)	2 (1.8)	0 (0.0)
또래친구압력	- -	- -	- -	- -	- -	- -	12 (10.7)	7 (12.3)
기타	4 (2.7)	0 (0.0)	2 (2.4)	2 (8.3)	5 (5.7)	2 (6.5)	1 (0.9)	1 (1.8)
합계	150 (100.0)	49 (100.0)	84 (100.0)	24 (100.0)	87 (100.0)	31 (100.0)	112 (100.0)	57 (100.0)

## 2) 성관계 후 얻게 된 점

여자청소년은 성관계 이후 ‘별로 얻은 게 없다’ 는 응답이, 남자청소년은 ‘성충동이 해소되었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자청소년의 경

우, 별로 얻은 게 없다’ 는 응답에 이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성충동을 해소’ 하였다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성충동이 해소’ 되었다는 여자청소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십대여성의 성행동 경험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비주체적으로 이뤄지며, 십대남성의 성행동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5. 성관계 후 얻게 된 점**

	2004		2007		2010		201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충동해소	50 (33.1)	0 (0.0)	28 (32.6)	3 (12.5)	37 (42.5)	4 (13.3)	31 (31.0)	8 (15.4)
친구들과 소통	3 (2.0)	2 (4.1)	4 (4.7)	2 (8.3)	6 (6.9)	2 (6.7)	5 (5.0)	0 (0.0)
호기심해결	16 (10.6)	1 (2.0)	7 (8.1)	1 (4.2)	19 (21.8)	5 (16.7)	12 (12.0)	5 (9.6)
수입	7 (4.6)	1 (2.0)	4 (4.7)	2 (8.3)	1 (1.1)	0 (0.0)	6 (6.0)	0 (0.0)
서로사랑확인	31 (20.5)	16 (32.7)	13 (15.1)	6 (25.0)	25 (28.7)	10 (33.3)	22 (22.0)	9 (17.3)
별로얻은게없음	39 (25.8)	24 (49.0)	24 (27.9)	6 (25.0)	20 (23.0)	15 (50.0)	20 (20.0)	28 (53.8)
기타	5 (3.3)	5 (10.2)	6 (7.0)	4 (16.7)	3 (3.4)	2 (6.7)	4 (4.0)	2 (3.8)
합계	151 (100.0)	49 (100.0)	86 (100.0)	24 (100.0)	111 (100.0)	38 (100.0)	100 (100.0)	52 (100.0)

이러한 경향은 피임경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피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임에 대해 몰라서’ (6%)라기 보다는 ‘분위기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 때문’ (39%)이라고 했다. 이때 성별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성적 쾌감이 덜할 것 같아서’ 이지만 여성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 미처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 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하기 싫다고 해서’ 피임을 못한 경우 여성의 9.09%, 남성의 1.28%가 대답하여 남성에 대한 피임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임을 포함한 성관계에 대한 교육에서, 성관계가 이뤄지는 맥락에 대해 얘기 나누고 ‘성적 주체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설마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를 응답한 비율도 24%로, 성관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임신이 주는 부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관계를 결정하고 피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성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맥락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하고 교육 및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 4.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현실의 맥락들을 고려하는 성적의사 결정훈련이 필요하다.

2013년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 의하면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주체성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비주체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십대들이 비주체적으로 성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원하지 않는 임신, 테이트 성폭력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지배적 성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기존의 남성중심적 성적 관계를 자연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적 데이트 성폭력이나 끈질긴 구애 등의 형태를 띤 또래 성폭력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애 관계 내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남학생의 경우 성관계를 하는 이유에 ‘성적 욕구 해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높은 것은 정서적 관계와 신체적인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태도 문항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성주체성’이 떨어져 외부적인 압력이나 문화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남자 청소년에게는 성적 욕망과 타인의 감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상호 존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애 관계에서 주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이 성표현물 이용, 자위 등의 증가폭이 점차 늘고 있어 여학생이 자신의 욕망을 조금씩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연애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성태도 조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성평등성’, ‘성주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로나 이유 등에서 ‘상대방이 원해서, 거절하기 힘들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인식 수준에 비하여 실천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성의 이중규범 문화 안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스스로 이러한 문화를 바꾸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면서 사회와 협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학생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성적 실천에 대한 태도와 협상에 대한 교육이, 남학생들에게는 성관계의 상호 존중성에 대한 교육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적인 성행동과 그 결과와 관련된 주체성 형성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강제적인 성(데이트 성폭력)과 존중과 배려가 있는 관계를 구분하는 힘을 키우고, 미리 사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지만 나중에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행동의 정도를 알도록 해야 한다. 결국 성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십대 청소년에게 성행동의 과정과 결과, 대처방안에 대한 성적의사결정 훈련을 제공한다면 원치 않는 성행동과 십대 임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자료

-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2010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2013 스무살 전에 알아야 할 성 이야기 앤 마를레테 헨닝, 티나 브레머-올제브스키, 도서출판 예문
- 2010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혜정외, 동녘
- 2007 여성학, 이재경외, 미래엠앤비

---

# MEMO



---

# MEMO



## 친밀함을 중단할 권리

### — 대학에서의 데이트폭력 사례와 인식을 중심으로—

허은영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전 연구원)

#### 1. 들어가며

당신의 애인이 어떨 때 사랑/자랑스럽냐고 질문을 하면 이성애자 남자 대학생 중에는 남들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은 예쁜 외모- ‘착한 몸매’와 얼굴-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성애자인 여자 대학생들은 같이 질문에 ‘애인의 능력’-학벌, 경제력 등의 배경-과 ‘재치와 자상함’ 등을 꼽는다. 물론 모든 대학생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다.

반 농담일지 모르지만, 반쯤은 진담일 수 있다. 이 절반의 진심에는 자기 애인이 자신의 예상과 다를 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삭제되어 있다. 고정불변한 상대방을 설정하지만, 자신도 변화하고,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선물을 할 때, 내가 누구에게 왜 무얼 선물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와의 관계, 그런 선물을 하는 게 적합한지, 선물을 하면 그 후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계산하면서 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선물을 고른다. 내가 선물하는 상대와 나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친밀성을 선물하는 것으로 상징한다. 특별한 선물은 특별한 관계,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특별한 관계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가? 선물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가? 보통은 특별한 관계를 중단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특별한 감정 표현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연락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선물을 중단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특별한 관계, 특히 연인 관계를 중단할 때, 그 동안 내가 준 것 다 내놔, 혹은 그걸로 인해 들어간 내 돈 얼마를 내놔 라고 한다. 이런 이들에 대해 진상, 혹은 찌따라고 부르며 우리는 잘 헤어지는 것의 중요성도 얘기하곤 한다.

이렇게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와 한계를 대학 내 데이트폭력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 내 성문화 의식과 실태를 연결 지어 살펴보며 과제를 찾아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대학에서의 데이트폭력 사례

대학 내에서 성폭력 상담소로 찾아오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성희롱이다. 강간, 혹은 준강간과 같은 성폭력은 형사고소 등의 법적 처리기관으로 직접 넘어가거나 혹은 은폐된다. 가장 많이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준강간이다. 뒤풀이 등 학내외의 술자리와 연관되어 술이나 잠에 취한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의 동기, 선·후배들 간에 발생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그것이다. 피해자에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라는 통념과 함께 작용하면서 피해사실이 감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입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은 집단준강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어떻

게 할 것인가? 상대방의 그 상태를 이용해 뭔가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우선인가? 상대방이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하는가?

그런데 이 친밀함이 쌍방의 연애나 일방적 구애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서는 더욱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A대학교에서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데이트를 할 때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여학생은 13% 가량이나 된다. 이는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의 5.1%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보통 피해 수치가 증가할 때 우리는 피해 사실이 증가하는 경우와 성인지력이 높아진 두 요인을 꼽는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남성은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율이 4.3%에서 3.4%로 오히려 감소한 걸 본다면 여성의 피해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①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0.8%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6%는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성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가해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남학생의 2.1%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12.9%)이 남학생(3.4%)에 비해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①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 (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계	빈도(%)	8(0.8%)	69(3.6%)
	여자	빈도(%)	0	55(12.9)
	남자	빈도(%)	8(2.1)	13(3.4)

여성	2010년	2014년	남성	2010년	2014년
가해경험	0.4%	0	가해경험	2.2%	2.1%
피해경험	5.1%	12.9%	피해경험	4.3%	3.4%

대학에서 상담해오는 사례들 중 호감이 있지만 사귀지 않거나, 사귀지만 헤어지려고 하는데, 연락하지 말라는데 연락해오거나 하지 말라는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내담자들은 힘들다. 문제는 원치 않는 언행을 넘어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네 가족/친구들에게 네가 \*\*한 사실을 알리겠어’ 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가할 때이다. 그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피해자는 그제서야 주변의 언니, 친구에게 말하거나 그걸 인지한 주변에서 물어보고 알게 된다. 그 상태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는 참는 거 보다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 임을 의미한다.

대학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고, 그 사례들을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 과제 등을 생각해보자.

### 1)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

대학생들 간에 같은 학교 혹은 외부인과의 연애 관계에서 상대가 원치 않는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 혹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옷차림, 성적 제스처 강요하기 등이 많이 나타난다. 성관계에서도 원치 않는 성적 강요를 할 수 있기에 데이트성폭력은 아내 강간과 마찬가지로 형태를 동반하기 십상이다.

동아리나 같은 과, 혹은 같은 학내 커플의 경우, 공개된 커플은 서로의 인맥이 사적/ 공적으로 겹치는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는 관계가 지속되지만, 폭력적인 행위가 있을 때 누가 피해자의 지지 자원이 될 수 있는가에서 피해자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한다. 특히 평화롭지 못한 방식이나 안 좋은 감정으로 이별했을 때 관계적 약자가 자신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전 애인에 대한 ‘외도’ 나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며 ‘우

린 평범한 사이가 아니고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해’ 라며 이별 후에도 수시로 행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는 가해자들도 있다.

이 경우 헤어지기 이전의 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별 후에도 가해자에 의해 소문이 나거나 가해자 중심의 관계 운영이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여러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상담소에서도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단순한 ‘연인간의 다툼’ 정도로 화해, 혹은 경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 2) 일방적 구애, 혹은 썸 단계에서의 폭력

서로, 혹은 일방적으로 호감이나 연애감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자신이 뭐가 부족하냐며 거절과 무관심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는 가해자들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나중에는 자신에 대한 무시, 자존감 상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상담들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이 분노하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언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신의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런 짝사랑을 옆에서 응원하는 경우 ‘열번 짚어보자’ 는 용기를 가해자에게 불어넣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로 종종, 짝사랑하는 친구를 응원하면서 혹은 가해자가 구애대상자에게 수면제나 약물 탄술을 먹게 하는 등 준강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상담자가 ‘애뜻한 짝사랑’ 에 집중해서 그것이 스토킹이

며 성폭력/성희롱임을 가해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왕 잘 사귀라’는 식의 가해자 심리 상담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를 그 폭력 상황에 머물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키게 된다.

### 3)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우리는 보통 이성애자들을 중심으로 한 데이트폭력의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비이성애자들의 관계에서도 데이트폭력과 갈등이 발생한다. 자신이 무성애자인 걸 아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구애하여 연애를 하기로 합의한지 며칠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서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 당한 사례가 있었다.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상대와 친밀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연애를 어렵게 결정했는데 다시 일방적 거절을 당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당하는 경험을 한 경우였다.

이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연애를 해야 정상이거나 연애가 기본 욕구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애는 기본’이라는 식의 정상가족, 이성애 커플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사고방식이 연애를 못하면 모자란 사람이라는 방식으로 싱글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별이나 데이트폭력을 연애의 실패로 규정하고 다른 연애를 해서 잊자는 식의 상담과 조언은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지 못한다. 핵심은 관계와 나에 대한 인식에 있다. 다른 연애와 관계에서도 인식과 힘이 없다면 다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지를 물을 때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



았는지’, ‘왜 이별하지 않았는지’ 를 묻는 것과 데이트폭력 혹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묻는 것 모두 피해자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담과 지원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했던 상황’ 과 맥락을 찾아나가면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단호한 거절과 이별을 할 경우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

데이트성폭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정확히 짚어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지속성, 피해자의 충격 등을 가지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벌로 가는 것에서 학내 성폭력 규정에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라는 명명이 없다면 상담소와 학교에서의 단호한 대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상담기관장과 사건처리대책위원회, 그리고 학교 징계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다. 심지어 당사자 앞에서도 ‘사귀는 사이였구만’, ‘짜사랑하다 차이니까 그런 거구만’ 이렇게 2차 피해를 주면서 ‘별일 아닌 다툼’ 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연구결과<sup>13)</sup>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으로 취약해진 피해자는 그 원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도 크지만, 그 후의 2차 피해나 해결과정의 어려움에서 겪는 고통과 트라우마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데이트폭력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특정되는 요소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

1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5),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의 재구성.

### 3. 데이트 폭력의 배경

친밀감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허구성에 기반 한 감정이다. 근대성은 개인주의를 소유의 자유의 기반으로 한다. 동시에 모순적이지만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무급가사노동에 근거한 가족주의를 경제와 이데올로기적 기초단위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핵가족과 결혼은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친밀성이라는 허구와 공존한다. 친밀성의 욕구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인간의 안정적 존립의 위기,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반영하면서 더욱 커진다. 그러나 더욱 이뤄지기 어렵다. 친밀해지고 싶은 상대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가질 수 없다면 증오하는 방식이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다.

#### 1) ‘연애하는 상대방에 의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실제 A대학 학생 응답자들 중 95%는 연애하는 상대방에 의해서도 성폭력은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4%, 남학생이 6%가 존재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애관계에서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많은 것은 2010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

다수가 데이트 성폭력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5% 가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 2) ‘내 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

또한 응답자의 78.5%가 ‘내 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6.5%의 사람들이다.

그 6.5%의 연애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문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이 참여한 일련의 구체적 조사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인식의 흐름들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은 젠더 이중규범을 살펴볼 수 있다.

통념1. 낙인	통념2. 규범
여성들은 무의식중에 강압적 섹스를 원하며 즐긴다 (평균 10.4%)	여성에게 순종과 헌신은 미덕이다 (평균 14.7%)
강압적 성행위라도 신체 수용반응이 있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남 14.7%, 여 7.5%)	남성은 성적으로 강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평균 22.4%)
여성의 아니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평균 25.9%)	사랑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상대를 쟁취해야 한다 (평균 7.9%)
애인/배우자한테 맞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남 3.2, 여 11.6%)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지나친 관심과 집착,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의 피해경험이 있다 (남 11.3%, 여 27.2%)
가정폭력은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남 22.4%, 여 13.8%)	동성 간에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남 9.2%, 여 3.3%)
성폭력(성희롱)은 당사자 간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성폭력(성희롱)은 대부분 성차별이나 힘의

<p>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 8.9%, 여 2.4%)</p>	<p>상하관계와 연관된 문제다 (평균 44.1%, 여 35.9%, 남 53.4%)</p>
<p>연애하는 상대방에 의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남 6%, 여 4%)</p>	<p>내 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 (평균 6.5%)</p>

### 3)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대학생들조차 성관계를 할 때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47.1%에 불과하다.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는 응답은 33.0%, ‘해본 적이 없다’ 는 응답은 19.9%로 나타나 피임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학생의 42%과 남학생의 51.6%는 ‘언제나 한다’ . 그러나 여학생의 27.2%와 남학생의 13.2%가 ‘(피임)해본 적이 없다’ 고 응답했다<sup>14)</sup>.

14)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으로는 콘돔이 52.9%로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질외사정(21.1%), 자연주기법(12.5%), 피임약복용(9.8%), 사후피임약(3.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 비해 2014년도는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줄고(88.2%에서 52.9%), 피임 확률이 낮고 위험한 자연주기법(2010년 2.1%)과 질외사정(2010년 5%)을 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그 때문인지 사후피임약을 먹는 비율이 늘어났다. 피임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30.7%를 차지했으며, ‘성감이 떨어질까 봐’가 29.5%,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서’가 17.4%, ‘분위기 깨질까봐’가 1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경우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피임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단 3명(1.2%)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학생이 103명(19.9%)에 달한다는 결과는 A대 학생들이 피임법을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피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성별, 학년별, 학부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대학 공동체에서의 관계의 특징

이화영의 글에서 제시하는 바처럼,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공통점이 많다.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 형식으로 승인된 가족관계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구성된 친밀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양상은 동일하다. 또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권력의 측면을 볼 때 대체로 젠더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데이트성폭력을 구분하며 데이트폭력의 개념을 채택한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타당하다. 이성간 폭력뿐만 아니라 동성간 폭력에서도 남성성이 주변화된 남성성, 즉 여성성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폭력적 침해 형태를 가지는 젠더폭력의 성격은 성폭력을 성적 욕망과 구별해준다.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에 참여할 고급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일차적인 역할로 삼는다. 하지만 대학은 명제적 지식을 넘어,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문 탐구와 사회적 인식을 공유해나가는 개방적 공동체 장이기도 하다. 그런 대학이 신자유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불안정해진 시민적 위치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의 인식이 커졌다. 조기 졸업 보다는 되도록 교환학생, 외국 연수, 휴학과 아르바이트, 인턴활동, 대학원 진학 등 스펙을 쌓으면서 대학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과와 수업 준비, 과제활동 등을 위해 학교에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확대되었다. 학생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팀 작업이 많지만, 그 내외부적인 경쟁은 더 치열하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심지어 동료 간의 관계가 위계 서열에 의해 강화되었다.

학생들 사이에는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을 겪어도 ‘인분교수만 아니면 (돼)’ 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외모가 스펙이 되어 시술, 성형 한번 하지 않는 학생들은 ‘웬 자신감’ 이라며 놀림 받고, ‘스스로를 가꾸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경제력과 능력이 있다면, 대놓고 알려져서 털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대학가의 이러한 세태와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성별과 나이, 학과에 상관없이 공통적이지만, 어떤 차이들을 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내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물었을 때, 40% 가량은 그저 그렇다고 답하지만, 평등해졌다는 답변이 45%가 넘는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두 배 이상으로 성평등해졌다고 체감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해졌다는데 현실적으로 성폭력, 성희롱이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 4. 지지 지원의 문제

##### 1) 젠더폭력적 교육공동체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반복될 수 있는 힘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에 있다. 이는 더 광범위하게는 학교 조직문화에서의 이중적 성규범에 근거한다.

학생들은 성폭력과 성희롱이 성욕구라기 보다는 성차별이나 권력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친구와 선후배, 교수학생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유형으로 광범위하다(아래 표 참조). 특히 일상에서 보여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과 성차별이 친밀감을 빙자한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언어적 유형 가해629건(63.6%) 피해930건(48.4%)	①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나 모욕 / 음담패설
	② 여성(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
	③ 수업시간 중의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발표, 표현
비언어적 유형 가해340건(34.3%) 피해714건(37%)	① 여성/남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특정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② 사무실, 동아리방 등에서 누드사진, 포르노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
	③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거나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반복하는 것
	④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
	⑤ 성적 모욕을 주거나 여성비하적인 프로그램이나 게임
신체적 유형 가해 12건(1.2%) 피해179건(9.4%)	① 권위를 빌미로 해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
	② 원치 않는데 키스,포옹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동
성폭행 가해 8건(0.8%) 피해 96건(5.1%)	①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② 교내외에서 발생한 강간/강간미수

이러한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31.3%는 ‘불쾌하지만 분위기나 관계를 고려하여 참았다’ . 나머지는 ‘일단 넘어간 후, 믿을 만한 친구나 선배와 의논해 보았다’ (20.8%)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10.8%). 결국 73.3%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문제가 생긴 즉시 그 자리에서 당사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은 11.3%, ‘전문상담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의논해 보았다’는 응답은 10.8%,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6%로 대응을 준비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경우는 26.7%로 나타났다.

## 2) 믿을만한 공동체의 부재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가 24.6%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문제제기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21.1%, ‘상대가 윗사람이라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다’가 20.4%로 차지했다.

이는 학교 내에서 작용하는 성인식의 수준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에 취하는 방식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의 1/4 가량이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남 24.9%, 여 7%)고 본다는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강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폭력(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는 응답에서 남학생의 40.8%, 여학생의 23.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피해자 책임론에 남학생들이 훨씬 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해도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3이나 차지한다. 그 이유의 1/3 이상이 ‘피해 사실이나 신상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라고 했다. ‘상담센터를 잘 몰라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지 걱정돼서’ 등의 응답



도 있었다.

따라서 학내 상담과 사건처리 기구가 갖춰져 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만한 조직문화가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 5.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교양과목 중에서 ‘현대인의 성과 사랑’ 이나, ‘여성학’, ‘결혼과 가족’, ‘섹슈얼리티’ 관련 과목들의 인기는 적지 않다. 하지만 과목이 많지도 않고, 필수과목도 아니어서, 학생들이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남는 학점이 있을 때 재미있을 거 같아서 수강하는 과목들이다. 하지만 제목이 이렇다고 모두 여성주의에 기반 한 과목인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설문에서도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 정보와 대응’, ‘연애에서의 갈등과 소통’, ‘임신, 피임, 성병 등의 성지식’ 등과 ‘성평등 모임’ 등을 성폭력상담센터에게서 제공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특강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단 한1시간 참여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조건에 있다. 청소년기의 제대로 된 성교육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관습과 군사주의, 학벌주의, 능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반여성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삼일한’ 처럼 북어와 여자를 ‘남성에게 맞추어’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 여성 혐오는 어린이 혐오, 외국인 혐오, 노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의 각종 차별과도 연결된다.

성차별에 기반 한 친밀함은 여성에게 감정노동을 부가가치로 기대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친밀노동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착취, 공격 받는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친밀함을 튼튼 권력남용과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친밀함을 선택할 권리, 친밀하지 않을 권리, 친밀해도 희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친밀함을 선택하고 강요 없이 즐길 권리, 그리고 친밀함을 중단할 권리는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남성중심적 친밀함의 프레임 속에서, 남성성의 가부장적 배당금을 빼앗긴다고 ‘김치녀’ 들이라 혐오하고 ‘몸매와 마음이 착한 여성’ 을 찾아나서는 남성들이여, 그대들은 언제나, 언젠가 ‘김치녀들’ 을 만날 것이다.

---

# MEMO

---

# MEMO

##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정은영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서도 심각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폭력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비해 데이트폭력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이 여성폭력의 주요 유형으로서 인식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와 이에 공감하는 활동가들이 데이트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폭력 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인 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데이트폭력 문제를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있고, 이러한 데이트폭력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발제문에서 이화영 소장님은 상담통계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과 데이트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데이트폭력에 관한 실증적인 통계자료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상담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트폭력의 현실을 진단한 위 발제문은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데이트폭력을 문제로 인식한 후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현 시점에서 사법기관을 통한 처벌 및 재발방지의 가능성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것으로 토론 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데이트폭력 상황이라고 인식하더라도 곧바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에서의 맥락과 유사하게 정서적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는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거나 지속적인 애정관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폭력 이후 가해자가 이를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이를 믿고 싶은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폭력행위는 한 번 수용될 경우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폭력상황에서 벗어나는 최후의 방법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의 단절 선언이 더욱 증폭된 폭력, 이른바 ‘이별폭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쉽사리 관계 단절을 실행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라고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기존의 통념, 즉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하였다거나 공동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깊은 인적관계를 맺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달리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단절을 통해 폭력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편견 등 성폭력 문제에서의 피해자유발론과 유사한 담론이 작용하여 데이트폭력 상황을 전해들은 지인들로부터도 공감 받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 수준 역시 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제 경험상 수사기관은 지인들 사이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출동하여 입건하는 등 폭력행위에 대해 즉각 대처함에도 데이트폭력 상황에 대하여는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는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통상 상당 기간 동안 데이트폭력이 지속되고 나서야 비로소 데이트폭력을 인식하게 되고, 데이트폭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관계의 친밀도, 정서적 의존성으로 인해 외부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고, 폭력상황이 주로 둘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력을 증명할 만한 인적 증거(목격자 등), 물적 증거(진단서, 상해 사진)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신고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관계의 단절을 결심한 후에야 데이트폭력을 신고하더라도 폭력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

되더라도 유죄의 처벌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데이트폭력 상황을 인식하게 된 피해자가 절박한 심정에서 피해 호소 방법의 하나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데이트폭력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게시물 삭제 등의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제에 의하면 타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에 관하여 허위 적시는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진실한 사실적시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문제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로 치부하는 현재의 통념 하에는 데이트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글이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데이트폭력에 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양형판단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09. 7. 1.부터 시행한 후 여러 차례 수정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중 폭력범죄 양형기준(2012. 7. 1. 시행)에 의하면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위 경우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피해자 측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적용에 있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달리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폭력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피해자유발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측이 유발하였다는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2013. 6. 19. 시행)에 의하면, 가중요소 중의 하나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들고 있습니다. 위 경우란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와 같은 인적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에 의하면 사제나 지인의 자녀와 같이 상호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참작한다고 하나, 이는 보호자 내지 감독자와 피보호자와 같은 상하 관계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데이트 상대자를 포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서적 애정관계 때문에 자신의 피해상황을 외부에 노출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쉽사리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폭력을 행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을 동반한 데이트폭력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의 이용을 가중요소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방안

에 있어 증명의 부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 부족 등의 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식 개선의 불씨가 지펴졌음에도 피해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피해자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제 사건으로는 폭력은 사적인 관계에 내밀화될수록 통제력을 상실하여 그 강도나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주변 지인이나 상담소, 수사기관 등에 피해를 호소하여 가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데이트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이 한 순간에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작은 노력들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집단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상담소들이 좀 더 체계적인 지원(법률지원 포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화영 소장님의 발제 취지에 적극 찬동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이는 더 강력해진 폭력의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떠한 형태나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찬성하며,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률지원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상담통계 등 자료를 통하여 우리의 데이트폭력 현실을 짚어주신 이화영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

# MEMO

---

# MEMO

[포 럽]

# 데이트/관계/폭력

데이트폭력을 말한다, 세 번째

---

발행일: 2015년 10월 29일 (한여전 2015-09)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이메일상담: [counsel@hotline.or.kr](mailto:counsel@hotline.or.kr)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1층

전화: 02-3156-5400 | 팩스: 02-3156-5499 | 이메일 : [hotline@hotline.or.kr](mailto:hotline@hotline.or.kr)

홈페이지: [www.hotline.or.kr](http://www.hotline.or.kr)

트위터: @kwhotline | 페이스북 : [facebook.com/kwhotline](https://facebook.com/kwhotline)

후원: 하나은행 128-910002-01505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